

朝鮮佛教統制機關 總本山建設에際하여

東 雲

佛敎을云謂하는者 반드시 大聖世尊의說演한 八萬四千法門들가르치 論議하드시 從來寺刹를參拜할야는者 依例히 三十一本山을爲始한 千貳百寺菴을尋訪하게되고 出家得度를願하는者 누구나다 依例히七千法侶에參陪하야 普照元曉가述한 初心自警文을배든時代는 佛敎의時節이야기되라게볼수업다。오날朝鮮의谷々에서 귀실고色다른 曰子宗이니 아모派이니하는 各種各樣의새看板下에 百餘寺院과五百餘布敎堂을배풀고 現今二十八萬의信徒를擁하고 年々幾萬의敎徒를獲得하고있는 內地佛敎十三宗五十六派들이늘수업는가타이다。

이現實을面前에서 朝夕으로目睹하는朝鮮佛敎七千法侶는 將次인지되지자는말인지 衝動에感覺초차일코말았는가 輸入以來千四百餘年の 기나긴歷史를가지고서 오날々 동생들의게法을뭇고 俗人の게寺刹淨化를배우고 그나마不足하야 朝夕禮拜하는法까지배우자는말이였는가 이제세삼스러히噴起니 覺醒이니 反省이니한는 귀얏은소리의 羅列은하고십지안라。그러나機運이既熟하야 朝鮮佛敎統制機關建設提唱이籍々하매 一種見解를말삼하고자하되 一個學徒의身分으로써 關知할領域이안임을스사로못기々도하되나 亦 朝鮮佛敎法侶의一員으로써 明日法城의一菴을死守하야 存亡을같이할任務가잇음을 覺悟할때에는우리들손으로 三寶道場을맡기고저하지는못하더라도 先師의道法道場을 蔑視하엿고할어백기지는안하야 되겟슴에 今日의重大한朝鮮佛敎動向에對하야 關心을가지지안할수업는 懇切한哀情에서 身分과非才淺

識을우를쓰고 私見의一端을披瀝하야 同志諸位前에叫訴하는바이다。

X X

元來佛敎는圓融無礙한敎理요 四海平等하敎團이라 一民族一國家偏하고 一宗一派에執着을發戒하는바이다。어디까지던지 人類全體를對象하야 和合僧伽의建設에究竟目標가有하기에 原始佛敎々團에잇서々釋尊在世時는勿論이어나와 滅后一百年동안一味相承하야 派爭分裂은보지못한적이였다。그러나 그後敎理나 敎團發展過程에잇서々 部派分裂時代가 自然到來하게된을想考할때 即大衆部와 上座部의對立이라던지 小乘大乘의敎理兩立이라던지가擡頭함에 上座部內에서도 十二部派가並立하고 大衆部에서도 四破九部로分裂되었는데 이제注意하야 그派裂된根源을綿密히推窮하여보면 釋尊在世時그弟子들間에 既히胎되었든것을推摘할수잇을것이다。即舊學과新學의對立이 婆羅門閥과刹帝利閥의階級的意識이며 經律의理論은立場의相違에서基因된것이다。그외에도 言論의不同이라던지 風俗習慣의相違라던지 또는 地理的干係 經濟的干係等特殊條件을舉示안할수없을것이다。또한가까운한例로 內地佛敎의宗派分裂된淵源을考察하여보더라도 그渡來當初에傳承한 諸宗々旨의相違도잇섯지만은 同一한宗으로도 公家貴族을對象하야 宣布發達된敎義儀式과一般庶民을對象하야 宣布發達된敎義儀式이 自然別立하야 別派를創立하게되여 今日과같은十餘宗五十餘派라는亂雜한奇現象을날우게된것으로도 充分히일수잇는것이다。이러한過程을探查할때에 今日우리앞에는 上述한바와如하야 各宗各派의固執主唱하는敎義儀式이 各色各異하야 各自의敎權伸張에餘念이無한 特異한雰圍氣가低廻하며 말아 朝鮮佛敎가자라난 그母體의風俗習慣을달나한點에서 그特殊한敎義儀式의所有라던지 또는 法規의으로特別取扱되는點으로서 朝鮮佛敎그自體의指導原理라할가 主義主張이라할가 宗旨의看板表明이 緊要하게된것은否定할수잇을것이다。그러나 宗旨間에對한것은 于先漸置하고 朝鮮佛敎가指稱하는 各個々體의寺刹이 必然的으로綜合하게된要件을充分히具備한것을 經讀認讀할수잇을것이다。即朝鮮佛敎의寺刹現況을概觀한다면 그構成된制度組織이 同一한形態下에잇을뿐만아나 內的으로攝心對像의本尊佛을局限치안코잇는點이라던지 所依經典을限定치안코 隨

機隨分하여 禪定을 하면서 觀經도 하고 念佛도 하면서 誦呪도 하는 無礙한點이라던지 法徒라는 法侶는 그 全一部가 朝鮮佛敎中 興祖 太古 普惠 國師의 法脈을 相續하는 點이라던지 甚至於 慶尙道「중이」 江原道 寺刹에 止住하되 拘礙가 없고 江原道「중이」 平安道 寺刹에서 法을 배우고 또 講法되 異論이 없으며 北方 信徒가 南方에서 受戒 稟持하되 北方 信徒가 이에 相關이 없는 것이다。 이 圓融 無礙한 既히 統制된 敎團의 寺刹令及 全施行規則의 特殊命令下에 地域의 分離도 안이요 宗旨多立도 안이며 또 行政單位도 안인 三十一個 本末이 無意味한 分散狀態에 呻吟하야 今日까지의 經路를 回顧한다면 有實 無益한 現狀을 觀破하기가 躊躇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客觀의 情勢와 內部에 保藏한 條件이 想應하야 今日에 비로소 朝鮮佛敎統制機關 建設氣運이 到來한 것은 當然以上의 當然의 歸結이라 毫利도 疑牙할餘地가 없는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이 必然의 趨勢의 歸結로 朝鮮佛敎의 敎政史上에 劃期的 紀念의 一章을 作할만한 一大會同이 今春 中央에서 開幕되었다。 會同 劈頭에 總督閣下의 「宗敎의 目的을 爲하야 一致 團結、 決然히 噴起할것은 朝鮮佛敎徒의 義務이며 使命이라」고 生覺한다。 今此에 感奮 興起하야 積弊를 一掃하고 面目은 一新한 一大勇猛心이 없을것 같으면 朝鮮佛敎 今後 容易히 再起할機會를 捕捉하기 難하리라 思料한다。……云々の 峻烈한 訓示다。 이어서 學務局長의 演述은 朝鮮內의 宗敎現況을 概說하야 信徒數、 神道十一萬三千、 日本內地佛敎二十八萬五千、 朝鮮佛敎十六萬七千、 基督敎四十六萬九千、 合百三萬五千人이라 함을 指摘하고 이를 朝鮮居住總人口二千二百八十九萬八千人에 比較할때 四分五厘強이라든 宗敎界의 微弱한 程度를 알수 있다고 斷하고 다음 社會敎育課長의 注意事項가운데에는 僧起 肅正에 關하야 「僧侶는 不得已한 境遇以外에는 常時로 長衫을 着用할것과 朝夕、 禮佛에는 그 職分이 있는 者뿐만 아니라 一山의 止住者도 不得已한 境遇以外에는 無漸參詣케 할것」을 말삼하였다。 以上 訓示 演述과 注意事項을 綜合하야 通覽함에 寺刹令下에 노인 朝鮮佛敎群이 當局者들눈에 있어 可憐 蘇動하는지 可憐 悲壯하랴고 또한 그의 歸着할곳이 可然히 된것을 示唆한다。 이들을 懼悚하게 頂戴한 代表 諸賢이서서 朝鮮佛敎 振興策이 果然 果實인것을 알았나이가 舉皆가 그리하지는 안겠지만은 個中에는 이것

이 안이고는 覺醒 奮發을 모르는 이도 있지를 안으니 以上과 一엇듯 指示와 誼實을 하라는 말인지 송송이 맥키는 일도 있지 않은 同一 命令下에 同一 使命과 役割을 가지고 進이나 退이나 恒常 運命을 같이 할 朝鮮佛敎 禪敎兩宗 三十一個 本末이 아무意味 없는 分散의 非와 아무統制 없는 不利를 異口同音으로 부르짖고 未備不具 現法規則에서 矛盾多端한 現制度에서 救出하고자 于先 統制機關을 우리들 손으로 우리들 힘으로 綜合하여 建設하자는 悲壯한 歷史的 決議를 하고 먼저 中央에 다 總本山 建物을 新築하랴 建設委員과 顧問이 選出되어라 法規起草委員會를 推定하랴 하고 着々 그 進行됨을 엿숨에 感激에 넘치는 歡喜의 情을 禁하지 못하는 바이다。 오즉 永遠히 健實히 이 朝鮮佛敎에 黎明의 曙光이 燦爛하기를 祈願하면서 또 一種 杞憂인지는 모르나 이理想의 統制機關 建設에는 要路 當務者의 必死의 努力은 勿論이 아니라 敎徒全體의 非常한 覺悟가 안이고는 所期의 出現을 疑心치 않을가 左記 몇가지의 難關이 있음을 觀破하는 바이다。 첫째 政敎分離가 確立되지 않은 現下制度에서 法規의 抵觸이나 되지 않을가。

다음 均等的地位와 權限을 가진 三十一個 本山住持 現下의 步調가 어기지나 않을가 또는 이들이 되까지던지 支持 奉戴한 用意과 決心이 七千 法侶들中에는 認識이 不足하지는 안는가 特히 掛念되는 것은 將次 出現할 總本山 그 自體가 法侶全體의 絶對的 信仰對象이 되어 法侶全體의 總意를 反映시킨 機關이며 機敏히 活動할 整然한 機構가 構成될 것인가 하는 등 諸太問題이다。

이 政敎分離를 要索하야 絶叫한지가 우리 敎界에서도 先輩中에는 相當한 苦戰이 있스면도 何等의 反應이 없고 依然 法規의 不合理한 第幾境에 빠져 呻吟하고 있는 形便이다。 宗敎政策 制度史를 概觀한다면 先進 文化 諸國은 모다 原始의 法王 獨裁主義인 敎國制度에서 帝王 神權思想의 政敎合一制度로 政敎合一制度에서 自國의 繁榮 向上에 有利한 一種 宗敎을 國敎로 指定하는 國敎制度로 國敎制度에서 數種의 宗敎을 特히 容認하야 保護 監督하는 公認敎制度로 이 公認敎制度에서 宗敎과 政治는 本質的 使命과 領域이 判異 區分됨으로 이를 分離하야 互相干涉치 않는 自主的 伸張에서 文化 社會와 人類 向上이 可能하다는 政敎分離 制度로 進展하

는 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모든法規의法源인憲法第二十八條는「日本臣民은安寧秩序를妨害하지안코 臣民된義務에背치함이안는限度로 信教自由가有함」이라고欽定되었다。即信教의自由라는權利를保障하되安寧秩序를妨害하지안을것과 臣民된義務의遵守를條件으로써 限界로한것이다。 그러면 이信教의自由라는自由의範圍는 勿論宗敎信仰의自由(內心)와 宗敎行爲의自由(外部의動作)의二方面이잇는데 이를狹意로解하여 信仰에만국치겠느냐 또는 行爲의自由까지包含하여 廣義로解할것인가는것은 學界論守의一로써解決되지안는課題다。 이에그論旨의一端을들어 紹介한다면 (一)憲法의保障은 信仰의自由에止하고 行爲의自由는包含치안는다는는 消極的解說과 (二)憲法의保障은 信仰과行爲의自由를包含한다는는 積極的解說이다。此說은 法律은外形의行爲를支配하는것이요 個人의心理作用에對해서는 干涉할수업는것이요 이信教의自由는 又外部에表現되는行爲에對한保障이다。그럼으로 宗敎上儀式禮拜其他宗敎的行爲를行하며 宗敎上宣傳에關한集會, 結社를함도또한自由라는것이다。 (三)憲法의保障은 信仰과行爲의自由를包含하나 結社의自由는 包含되지안는다는는折衷 說이이것이다。 이러한大端不分明한立場에서의 信教自由인만큼 宗敎行爲에關한細密한規定은 別로法律에依한다던지 或은法律의規定할바안이라던지하는 明文이입기까닭에 現下朝鮮의政敎干係는行政當局으로부러 命令의形式인 制令總令其他官通牒이며 甚至於注意事項까지發하여가며 直接間接으로全面的干涉을하는바이다。萬一에憲法의根本精神이 이積極的解說에잇다하면 얼마나矛盾撞着된事實이나 彘者內地에잇서 官廳一方의意思로制定發表한法令은 命令의形式에서 強力한法律의形式으로變更하라 文部當局에서 前後三次나宗敎法案이니 或은宗敎團體法案을議會에上程하였으나 上述한바와如하여 亂立한各宗派의利害干係에서도잇지만은 特히憲法의立法精神의信教自由에背馳된다는것으로 審議未了로 그通過를보지못한形便이다。朝鮮의宗敎政策에잇서 그表面에날아난法令의差別的待遇와矛盾된點은 一二가안이다。大正四年八月總令第八三號布敎規則第一條에는「本令에서 宗敎라稱함은 神道, 佛道及基督敎를謂함」이라고하였다。即三種의宗敎를公認한다는것이다。이公認한佛道가운데 特히朝鮮佛敎를干涉하는 明治四十四年六月制令第七號의寺刹令七個條와 同年七月

總令第八四號의寺刹令施行規則十六個條를通覽함에 寺刹創立에對한條文은없고 昭和十一年八月總令第八〇號의寺院規則(日本內地佛敎에適用)第一條에는 寺院을創立하라는때는……云々한條文이다。다만寺刹令第一條에는 寺刹의併合移轉及廢止에對하여는 規定이없다。그리고法令의個條個條에는 禁止라던지認許의規定이嚴格한他面에는 死文에歸한條項도없지않다。그리고 未備한一例로는 行政當局의認許裁決이 絕對의權限을가지고잇는데 萬一에裁決處分이不發할時에도 이를救濟할길이全無한것이다。即不服의抗告를하고자하더라도 行政訴訟이나 訴願을提起할法規가없으니 現行制度로는不得已을 甘受하거나 又是無力한請願이라는 一狀哀願을上達하는수밖에는 別道理가업는形便이다。

구미이 思議하지도안치만 宗敎分離의確立은姑捨하고 宗敎政策의法源을忘却하고 使用하라하며 또한法侶스사로 그리되기를願하고請하는대는애도란다。 이러한法的難關을앞에두고 總本山建設을圖하는當務者諸德의苦心努力이야 오즉悲壯한覺悟가잇스리라지사하오나 어의까지던지分散의無義와統制의必要를力說하여 憲法第二十八條의信教自由의 根本精神에立脚한 公明正大한合理的的新法規가制定되어 宗敎根本使命이遺憾없이發揮될 朝鮮佛敎의總本山이健實히出現되기를祈願하는바이다。

X

X

다음三十一個本山住持和尚의步調一致에對하여는 煩言을費코지하지안으나 그러나執業者爲主로最高의地位와權勢로서 私腹의利害打算과 名譽의萎縮을憂慮하여 三十一柱礎中一基라도毀損이生할時는 七千法侶의眼孔은소일것이다。多幸히今日까지의態度로서 特別히모다어김이업는것은 總本山建設을爲하여多幸한일인同時에 朝鮮佛敎의한자랑이다。이조員一致의堅固한態度를 一層더一強化하는意味에 前者國民精神總動員에對하여 試한首相近衛公의演說一句의引用을許한다면「吾等이今日에 이것을解決치못하면 吾等の子孫이 다시큰困難下에 어느때던지 解決을必要로할것이다。果然그러하다하면 一歷史的大事業을吾等時代에서 解決한다는것은 吾日에生을바든 우리同時代民의光榮이니 우리는歡喜하여 이任務를遂行할것이라生覺한다」이다。再吟味할바이다。그리고 七千法侶가세로히마지할統制機關에對한 心이어느程

度이나는 것이다。過去 우리 先師들이 朝鮮佛敎의 統制聯合에 對하여는 온갖 辛酸을 經歷하였다。저 聯合時代 總務院時代、敎務院時代를 通하여 어느 時代나 그 所期の 成果를 收得하지 못한 것은 그 時代 當務者들의 宜誓 決心이 凡然한 것도 안나오 비록 私法이나 法規가 整備치 않은 것도 안나오다。중의 公事 務員 公事업이라고 法侶 各自가 이 聯合 統制機關에 對한 自治의 關心이 缺乏하였다는 것을 主要原因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過去 因習의 惰性이 이러하게 認識의 不足, 即無知의 所産일 것이다。個中에도 尙惡性은 備劣한 猜忌心의 發動과 果隨한 損의 胸算과 蝸牛角 같은 地位名譽의 保藏에서 私와 個를 爲하여 公과 衆을 亡친 것이다。이 는 그들 先祖가 遺한 亡之本性이라 民族性과 風土의 影響이다。미루고도 십호내 他方에 敎養의 不足과 訓練의 未及도 있을 것이다。事實 七千法侶의 敎育狀況을 一瞥한다면 如左하다。

僧	五、九三二人中	尼	九八六人中
小學程度	九四九 16%	二四	2%
中等程度	四七七 8%	七	0.7%
專門程度	三二八 5%	—	—
僧侶의 資格者	一、四五六 25%	六五	6%
經文所解者	一、五三七 26%	一七九	18%
其他	一、一五五 20%	七一一	73%

그러고 僧侶의 資格이 있다고 할 수 있는 34%中에 所謂 千佛이 出世하여도 渡度하지 못한다는 烙印마는 混 弊黨毒蠅이 가 일나나만은 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그러고 또한 一般通性으로 보게 되는 것은 法侶互相間 個人은 批判할 때에는 그 人物의 情의 方面보다 智의 方面에 置重하고 評價하면서 衆이나 公에 對한 때에는 正反對로 理智의 批判이 稀薄하지는 않은가 도싶다。이러한 여러 가지 弊弊에 關한 敎養問題라든지 指導問題는 別로 하지 미루거나 時的 總本山建設에 對하여 法侶의 取할 態度, 即認識과 關心의 注入이 急先務가 아닐가 生覺된다。다시 말하면 佛業運動이 急先務가 안년가 하는 것이다。

X

X

다음 總本山의 機構組織問題인바 이는 第二階段의 事務의 組織이라 隨時隨期하여 適宜히 改造될 것이라 해서 輕視할 수도 있스니 그러나 누구나 總本山을 云謂하는 者는 最大 關心事일 것이다。從來의 失敗 經驗에 鑑하여 橫의 中央聯合機關의 制度를 捨하고 縱의 信仰結合으로 一束으로 하라는 總本山制度를 取擇한 것은 尙注目 할 바이며 眞實性이 있고 또한 興味가 있다。宗敎團體는 그 本質의 으로 恒常 信仰生活에서 流動되는 것만큼 強靱한 僧伽歸가 이를 要求한 것일 것이요 또한 朝鮮 法侶의 心理狀況을 洞察한 合理的 結論의 所産임을 짐작한다。그능의 心理根性이 上級 監督官廳의 指示命令이 안니면는 愚측이 지를 안고 罰金이나 懲役으로 制止하는 法規가 안니면는 개방구맛치도 生覺지 않는 徹底한 奴隸的 根性의 所有者인 자라 이를 流脚하고 連結하라며는 奇想天外의 手段이 안니고야 그 成果를 不得이라 斷하고 綿密한 研究와 悲壯한 覺悟下에 總本山制를 決定한 것은 大英斷이다。이에 吾人은 이 構成組織에 對하여 提示할 何等의 俱案은 업스되 오즉 生覺하는 바는 第一에 朝鮮 佛敎의 大小 千餘寺刹가운데에서 史의 背景을 豊富히 가지고 어느 누구의 指目하더라도 肯定할 만한 一寺를 外格히야 絶對 信仰의 總本山寺刹이라 命名하고 中央에는 總務廳이라 할가 宗務院이라 할가 하는 宗務의 本部가 잇서 機敏한 統制活動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다음에 中央本部機關은 立法司法及行政의 所謂 三權이 確立하되 特히 立法機關은 行政과 司法에 分離하여 七千法侶의 輿論이 反影된 權威있는 獨自의 機關이 構成되기를 바라는 바이다。萬一에 이들 分離를 안고 行政 當務者로써 立法機關의 地位까지를 兼攝케 할다면 後日 他時에 잇더한 暴規가 讓成되지 않는다고는 豫斷 못 할 것이다。그림으로 創設 初期에 百年의 大計이나 永遠의 軌道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 歷史의 大事業인 總本山은 確實이 胎胎는 하였다。어디까지던지 健全한 完全한 大丈夫 總本山兒가 出産하야 할 것이다。上來 여러 가지 難關을 克服하지 못하고 萬一에 畸形兒나 不具兒를 出産케 한다면 차라리 流産하야 버릴지언정 恨을! 怨을! 萬代의 後孫의 게 남기지 말 것이라 生覺하는 바이다。多幸히 產婆役인 建設委員 諸氏의 賢明한 洞察과 法規委員 諸氏의 明晰한 頭胸로써 朝鮮 民衆의 佛敎인 朝鮮 佛敎의 總本山을 建設함에 際하야 精進精進, 勇猛精進이 게 서기를 바라는 바이다。(丁丑十月) 數字及 引例文은 多分히 左의 參考에 依함。

一、昭和十二年度三十一本山住持會議錄 一、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敎育課編 昭和十二年度分、朝鮮의 宗敎及 享祀一覽